##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모집단위및학과성적평가관리위원회운영규정

제정 2000. 02. 15.

개정 2001. 09. 03.

개정 2010. 08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의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모집단위 및 학부 또는 학과 성적평가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각 모집단위 및 학부 또는 학과별로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모집단위장 및 학부장 또는 학과장이 되며, 모집단위가 학과군의 경우에는 학장이 위원장이 된다. 위원은 모집단위 및 학부 또는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- 1. 다른 학교(외국의 자매결연 대학 등 외국대학 포함)·연구기관·산업체 및 대학 부설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행한 교육·연구 또는 실습 등의 학점의 인정
- 2. 편입생 또는 전입생을 위한 선이수교과목 지정
- 3. 전입생의 학과목 및 학점평가 인정
- 4.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 이수교과목 지정

- 5. 재입학시 성적의 인정
- 6. 전과생의 이수과목 및 학점평가 인정
- 7. 출석인정을 위한 현직과 관련된 교과목 선정
- 8. 기타 학점 및 성적인정에 필요한 사항
- 제4조(위원장)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회의소집)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제7조(의결 정족수) 위원회의 의사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할수 있다.
- 제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##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으로 학과단위평가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이 규정은 200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31호, 2010. 8. 30)

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(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)